

의안번호	제2924호
의결	2025. . .
연월일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석한 의원 등 5인
발의연월일	2025. 3. 21.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석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24
----------	------

발의연월일 : 2025. 3. 21.

발 의 자 :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의원
(5인)

1. 제안이유

고성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성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성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명시(안 제7조)

나. 고성군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기준 정비(안 별표 1)

다.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15호

- 예고기간: 2025. 3. 21.(금) ~ 2025. 3. 27.(목) [6일간]

- 예고결과: 의견 없음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고성군 자연휴양림의 사용료 징수 기준과 그 밖에 관리·운영”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시설사용료)”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연휴양림”을 “법 제21조의5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제7조 관련)

○ 시설사용료 기준

구분		기준	사용기준	요금(원)		비 고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및 주중	성수기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및 주말	
숙박 시설	숲속의 집 (단독형)	A(4인실)	1동/1박	60,000	80,000	
		B(6인실)		100,000	120,000	
		C(6인실)		100,000	120,000	

※ 비 고

1. “성수기 및 주말“이란 성수기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앞날을 말하며, “비수기 및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2. 숙박시설의 1일 미만 사용 시에는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3. 숙박시설 인원초과 시 1명당 1만원을 징수한다. 다만, 7세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제7조 관련)

1. 입장료: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2. 시설사용료

구분		규격	수용인원 (명)		사용기준	요금(원)		비 고
			기준	최대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및 주중	성수기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및 주말	
숙박 시설	숲속의 집 (단독형)	20㎡	2	3	1동/1박	60,000	80,000	A동
		33㎡	4	6		100,000	120,000	C동
		36㎡	4	6		100,000	120,000	B-1동
		56㎡	6	8		120,000	140,000	B-2동

※ 비 고

- “성수기 및 주말”이란 성수기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앞날을 말하며, “비수기 및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숙박시설의 1일 미만 사용 시에는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 숙박시설 기준인원초과 시 초과 1명당 1만원을 징수하며, 수용인원은 해당객실의 최대인원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7세 미만은 인원초과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나 수용인원에는 포함된다.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제8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면제 기준

○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주민등록표 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감면대상	대상기간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및 주중	성수기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및 주말	비고
1. 고성군민		20%	20%	
2. 다자녀 가정		20%	-	
3.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	-	
4. 국가보훈대상자		20%	-	
5. 수급자		20%	-	
6. 한부모가족		20%	-	
7. 다문화가족		20%	-	
※ 비 고				
- “성수기 및 주말“이란 성수기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앞날을 말하며,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감면대상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한다.				

-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고성군민 감면인 경우 사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다자녀 가정은 1가구 2자녀 이상으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제8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면제 기준

○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주민등록표 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감면대상	대상기간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및 주중	성수기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및 주말	비고
1. 고성군민		20%	20%	
2. 다자녀 가정		20%	-	
3.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	-	
4. 국가보훈대상자		20%	-	
5. 수급자		20%	-	
6. 한부모가족		20%	-	
7. 다문화가족		20%	-	
※ 비 고				
- “성수기 및 주말”이란 성수기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앞날을 말하며, “비수기 및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감면대상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한다.				

-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고성군민 감면인 경우 사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다자녀 가정은 1가구 2자녀 이상으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고성군 자연휴양림의 사용료 징수 기준과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 <u>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u> ----- ----- ----- -----.
제7조(<u>시설사용료</u>) <u>자연휴양림</u>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u>입장료 및 시설사용료</u>) <u>법 제21조의5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u>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0의5.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사람 1명(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동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을 선순위 유족 1명

10의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